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4. 03. 05. (화)	총 5페이지	담당자	변호사/상담원
서울 영등포구		http://www.teen-up.com		
전 화	02-6348-1318	전 송	02-2690-1255	teen-up.com@daum.net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우쭈쭈(닉네임)”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redacted] 검사의 기소 처분을 환영하며,
수사기관은 “우쭈쭈”와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범죄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장수사하라.**

십대여성인권센터는 KBS 시사기획 창과 공동하여 2022년 8월 2일을 시작으로 2022년 9월 20일, 2022년 10월 18일 총 3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피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방영하였습니다. “우쭈쭈(닉네임)”는 위 다큐멘터리 촬영 과정 중 13살 초등학교생을 연기한 성인 배우를 실제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알고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지속하며 성착취물 제작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이뤄지는 그루밍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전형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자입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2023년 6월 1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우쭈쭈”를 서울중앙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추행약취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실과 본 고발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우쭈쭈” 라는 닉네임밖에 알지 못했던 익명의 남성을 검거하여 전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자 우쭈쭈(닉네임)를 추적, 수사하고 각 혐의 전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서울중앙경찰서의 결정을 환영한다.

http://www.teen-up.com/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2&idx=3878&board_md=view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본 고발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고, 드디어 2024년 2월 5일 검찰은 “우쭈쭈” 를 닉네임으로 사용한 50대 남성 이모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검찰의 기소 처분을 열렬히 환영하며, 기존에는 온라인상에서 행위자가 대화의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성착취 목적 대화를 나누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위반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실제로는 신분을 위장한 경찰인 경우에 불능미수죄 성립이 불가능하여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신분위장수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지만 본 고발사건을 통해 “우쭈쭈” 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자들이 기소됨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위장수사를 적극 시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우쭈쭈” 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법원의 판단까지 모니터링할 것인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취재·보도하여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십대여성인권센터가 고발한 “우쭈쭈”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보고 싶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하자 용돈을 많이 줘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방을 얻어 그곳에 돈을 놓아두면 피해자가 쓸 만큼 가져가서 쓸 수 있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면 용돈을 많이 줄 것처럼 말하고,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고 용돈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인 것처럼 오인, 착각에 빠지게 하여 추행행위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기소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가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고 있는 성착취물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제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성인 배우로 아동·청소년이 아니었고, 옷을 입은 상체 일부 사진만 전송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에 ○물 싸주고싶네ㄱ” 라는 메시지와 남성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 요구사항

종전에는 수사기관이 신분위장수사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행위자가 위장수사에 투입된 경찰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저질러 검거되더라도 불능미수죄의 성립이 불가능하여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신분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처벌 규정을 마련한 본 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고발사건을 계기로 실제로 성인인 경찰이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하여 수사하고 행위자가 그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알고 접근하여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상 행위자를 기소하여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신분위장수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아동·청소년/사이버/성착취(성매매 등) 관련 이슈 생산과 연대활동, 아동·청소년 성착취(성매매 등) 방지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연대 등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